2020. 05. 21.(화) 10:00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안 건]

○ 제천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 1

○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 18

○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3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상 만

의안번호	2813

제천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발 의 자 이정임 의원

[제정이유]

❍ 제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공공구매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20. ~ 2020. 5. 10.(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천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있어 제천시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안번호	2814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개정이유]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령 및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인용 법령 제명 및 근거조항 수정(안 제2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0. ~ 5. 1.(20일)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의안번호	2815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발 의 자 제 천 시 장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변경 및 해촉 사유를 추가하고

❍ 법제처 권고에 따라 과도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정수를 기존 9명에서 개정 11명으로 변경(안 제7조 1항)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원을 각 호별 2명에서 3명으로 변경(안 제7조 2항 1호, 2호)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해촉사유를 추가(안 제7조 4항 4호)

❍ 법률의 근거 없이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 삭제(안 제13조 5항)

[참고사항]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4. 10. ~ 05. 0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정수 변경 등을 적용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과도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제한 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

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 9. 27.>

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해당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 9. 27.>

의안번호	2816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개정이유]

❍ 2018년 법제처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개선 권고

❍ 제천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유발계수 조정 필요

❍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교통량 감축이행기준 구체적 명시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감축 활동 적극 유도

[주요내용]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를 정함(안 제4조)

❍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안 제6조)

❍ 감축활동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제출(안 제8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 기　　간 : 2020. 03. 20. ~ 04. 09.(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제천시 인구규모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교통량 감축 활동 종류 확대 및 부담금 경감률 세분화로 교통량 감축 이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감축 활동을 적극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번호	2817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개정이유]

❍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관련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의 임상기준을 산지관리법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21조 제1항 제1호)

❍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충주댐주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 지역의 경관 제한기준 삭제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시 주택간의 이격거리 제한기준을 당초 “10호이상 가구로부터 200미터이상 이격”에서 “5호이상 가구로부터 300미터 이상(5호미만일경우는 200미터 이상) 이격”으로 강화(안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시 집단화된 농지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지정리지구만 입지 제한토록 개정(안 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참고사항]

{관계법령}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3. ~ 2020. 4. 2.(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대상토지의 임상기준을 산지관리법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근거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충주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0미터이내 지역의 경관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 기준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영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

를 말한다. 이하 이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나) 삭제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안번호	2818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개정이유]

❍ 상위법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제명 반영(안 제1조, 제2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25. ~ 4. 14.(20일)

❍ 제출의견 :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위임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 계 법 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의안번호	28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건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제안이유]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되어있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결정		집행		미집행		미집행시설 中 장기미집행시설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574	18,048,396	1,311	14,914,446	263	3,133,950	227	2,610,425
도 로	1,199	5,688,133	968	4,568,910	231	1,119,223	206	962,203
공 원	81	1,013,023	68	659,136	13	353,887	10	349,417
녹 지	70	437,621	64	330,116	6	107,505	6	107,505
유원지	1	1,188,221	-	-	1	1,188,221	1	1,188,221
공공체육	84	4,955,786	78	4,632,239	6	323,547	-	-
기 타	139	4,765,612	133	4,724,045	6	41,567	4	3,07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분			계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227	2,610,425	98	160,293	129	2,450,132
교통시설	합계		210	965,282	96	151,499	114	813,783
	도로	소계	206	962,203	92	148,420	114	813,783
		대로1류	5	515,265	-	-	5	515,265
		대로3류	3	40,227	2	35,362	1	4,865
		중로1류	2	25,844	1	7,094	1	18,750
		중로2류	4	36,670	2	5,163	2	31,507
		중로3류	5	44,555	1	4,543	4	40,012
		소로1류	14	49,697	7	14,963	7	34,734
		소로2류	55	140,963	17	48,173	38	92,790
		소로3류	118	108,982	62	33,122	56	75,860
	주차장		4	3,079	4	3,079	-	-
공간시설	합계		17	1,645,143	2	8,794	15	1,636,349
	공원	소계	10	349,417	1	5,167	9	344,250
		근린공원	4	334,597	-	-	4	334,597
		어린이공원	6	14,820	1	5,167	5	9,653
	녹지	완충녹지	6	107,505	1	3,627	5	103,878
	유원지		1	1,188,221	-	-	1	1,188,221

[참고사항]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건설과, 산림공원과 등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장기미집행시설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집행 가능성까지 심도있게 고려한 결정이므로, 결정된 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함.

< 관 계 법 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2820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 출 일 2020. 05. 12.
○ 제 출 자 제 천 시 장

[심의안건]

○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건

(단위: ㎡, 천원)

구분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격)	취득사유
	토지		건물(시설물)		공작물		
	필지	면적	동	면적	수량(식)		
계	12	5326.5	5	884.6	-	1,918,355	
도시재생과	1	2,630	-	-	-	597,536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	11	2,696.5	5	884.6	-	1,320,819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

○ 2020년 제2회, 제3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필

[검토의견]

①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건은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계획안 중 사업구역 내 공매 예정 국유재산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제28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계획안 중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추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위해 필요하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